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거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5(목) 10:00

###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27호

나. 제 출 자 : 엄샛별 의원

다. 제출일자 : 2024. 4. 15.

라. 회부일자 : 2024. 4. 15.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를 기존 대형 용량뿐 아니라 작은 용량까지 확대·제작하여 구민의 폐기물 처리 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별표2 제2호 표에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10리터, 20리터 용량 확대 및 가격 명시(안 별표2의 제2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4. 16. ~ 2024. 4. 22.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금천구 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를 기존 대형 용량뿐 아니라 작은 용량까지 확대·제작하여 구민의 폐기물 처리에 편리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별표2 제2호 표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10리터, 20리터 용량확대 및 가격 명시(안 별표2의 제2호).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작은 용량까지 확대하여 구민이 폐기물 처리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폐기물 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

##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다)
  -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처리 신고자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